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절차(6판) [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용]

(중앙방역대책본부, '20.2.20(목))

- (법적 근거) 중국 후베이성(우한)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는 임상양상,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'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'을 적용하여 대응
- (대응 방향)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 작성
- ※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, 잠복기, 대응절차 등 변경

I. 개요

1. 대응 원칙

가. (법적 근거)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**는 임상양상,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'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'을 적용하여 대응

나. 대응 방향

- 코로나19의 조기 인지 및 발생양상 파악
- 코로나19의 신속한 역학조사, 환자 및 접촉자 관리
-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

다. 관리 정책

- 신종감염병 환자 진료시 대응 방안 마련
- 음압시설 및 적절한 오염제거 공간 등 감염예방으로 병원내 2차감염을 억제하고 의료진에 대한 안전 확보
- 지자체, 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 전파 예방
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정보

*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

정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ARS-CoV-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
질병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정감염병 :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: U07.1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ARS-CoV-2 :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
전파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재까지는 비말,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-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, 코, 입을 만짐
잠복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14일 (평균 5~6일)
진단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자 :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: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, 특히 유전자 검출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열, 인후통,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
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증 치료 : 수액 보충,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
치명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치명률은 1~2%이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단, 고령,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,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, 사망 초래
관리	<p><환자 관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준주의, 비말주의,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
	<p><접촉자 관리>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</p>
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올바른 손씻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, 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, 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: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 가리지,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
II. 사례 및 접촉자 정의

본 사례 정의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'경계단계' 상황에 적용하며, 국내 확진환자 발생, 역학 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1. 사례 정의

○ 확진환자

: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
※ 진단검사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전자(PCR) 검사, 바이러스 분리

○ 의사환자

①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 °C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 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

○ 조사 대상 유증상자

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 국가·지역*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* 일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, 수시 변동가능

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*

* 사례)

1)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 국가·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3)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

4)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

< 신고 대상 >

1.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2.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 +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3.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+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4.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
5.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* 방문 +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6.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
* 일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

III.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대응 절차

1. 대응 절차 요약

- ◎ (병상배정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격리병실 배정 및 입원 준비
 - ◎ (격리입원) 개인보호구 착용한 상태로 환자를 격리병실까지 이송
 - ◎ (검체채취) 상/하기도 검체 채취 후 3중 포장용기에 포장 및 검체운송 위탁업체에 전달
 - ◎ (환자관리)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
 - ◎ (격리해제)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 및 퇴원 조치
- ※ 이 지침내용 이외 코로나19 환자 대응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」에 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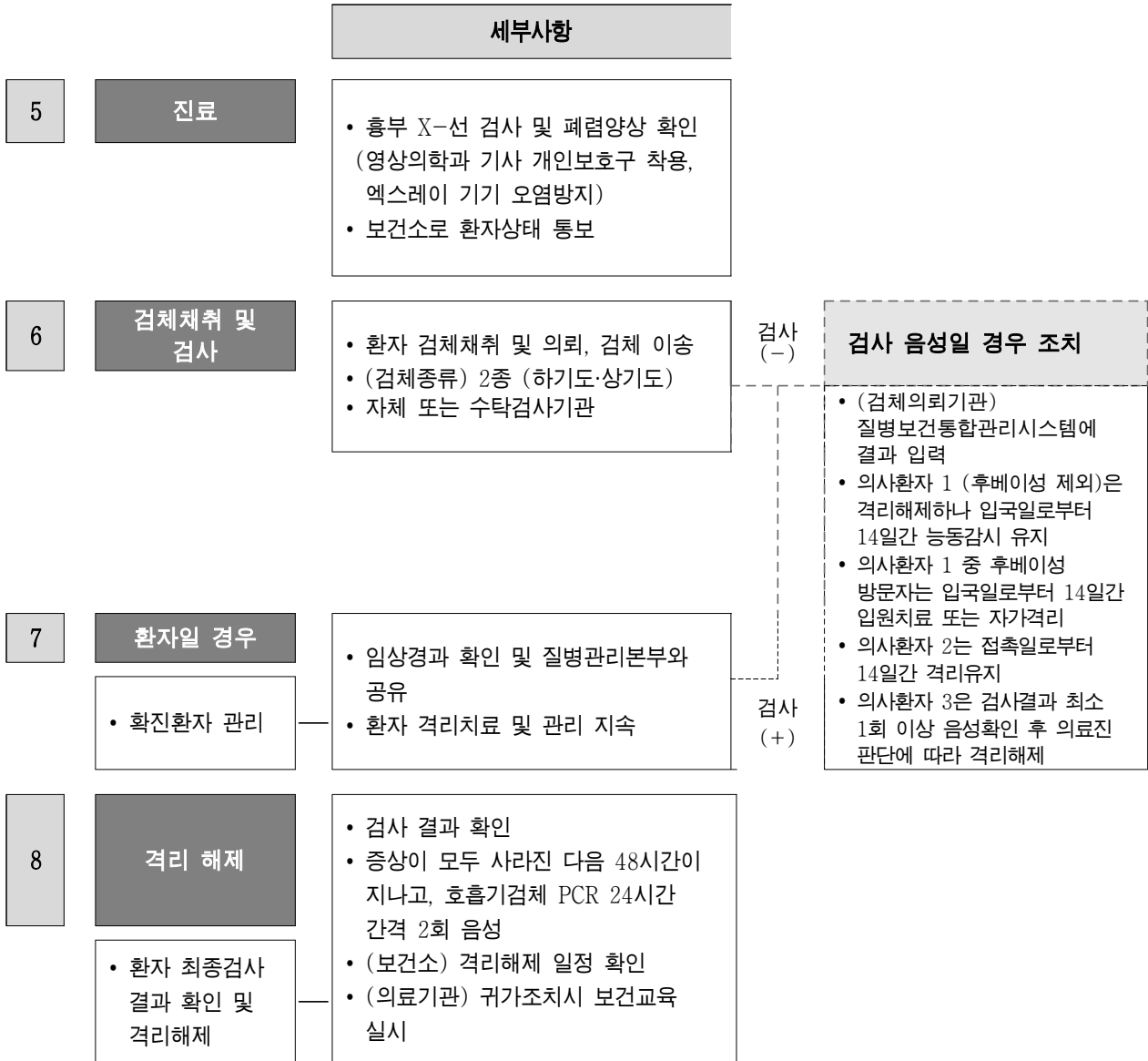
2. 대응 절차

□ 확진환자

		세부사항	주관
1	병상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보건소) 환자 발생보고 및 입원치료 통지 • (시도) 병상배정 • (격리병상) 병상가동 준비 	<p>환자 소재지 관할 시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</p>
2	병상가동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자 상태 및 인적사항 확인 •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확보 • 의료진 및 직원 비상 근무조 마련 • 병상준비 (전실물품 확인, 생활용품 준비, 필요시 통역, 특수식사 등 준비) • 자체 SOP에 따라 원내 담당부서 준비 	<p>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</p>
3	환자 이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자 상태, 이송 소요시간 확인 후 원내 진입장소 알림 • 이동시 별도 동선 확보 : 통제구역관리, 승강기 단독운행, 폐쇄구역 표시 등 • 개인보호구 착용 의료진 및 이송카트 대기 : 구급차 도착시 환자 하차 도움, 관련 서류 확인 • 현장통제요원 마스크, 장갑 착용 • 전용 엘리베이터로 환자 이송(환경표면 접촉 최소화) • 환자 이송 후 이동 동선 환경 소독 	<p>국립검역소 최초인지보건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동시 감염노출 최소화 		
4	입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원수속 • 입원생활, 진료, 검사 및 주의사항 안내 : 진행예정사항, CCTV 동의서 작성 • 격리병상 출입 기록 • 폐기물 관리 	<p>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입원 및 격리조치 		
5	진료 /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흉부 X-선 검사 및 폐렴양상 확인 (영상의학과 기사 개인보호구 착용, 엑스레이 기기 오염방지) • 임상경과 확인 및 질병관리본부와 공유 • 환자 검체 채취 및 의뢰(자체 또는 수탁) 	<p>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</p>
6	격리 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검사 결과 확인 •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, 호흡기검체 PCR 24시간 간격 2회 음성 • (의료기관) 귀가 조치시 보건교육 실시 • 격리해제기준 참조 	<p>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자 최종검사 결과 확인 및 격리해제 		

□ 의사환자

① ~ ④ 확진환자와 동일



가. 발생신고

- 최초 인지한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)로 구두,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신고
- (의료기관/보건소) 내원한 환자가 사례정의(국외 방문력, 확진환자 접촉력, 임상증상)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

- (의사환자) 신고서의 비고(특이사항)란에 의사환자의 구분을 입력

<p>[의사환자 구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사환자 1 :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· 의사환자 2 :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· 의사환자 3 :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폐렴
--

나. 검체채취

- (채취 장소) 격리병실
 - (검체종류) 하기도(가래) 1개 및 상기도(구·비인두 도말 혼합) 검체 1개
 - (하기도 검체)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, 멸균용기(가래통 등)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
 - (상기도 검체)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와 함께 수송
 - (검사의뢰)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,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
- *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

- **(검사결과)**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를 신고한 보건소로 검사결과 통보
 - 보건소는 「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」 → 환자감시 메뉴에 결과 입력·보고
 - 검사결과는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
- * 양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(043-719-7790, 7979)로 즉시 유선통보

다. 격리해제

○ 격리해제 기준

- **(의사환자 1)**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는 해제하나,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**14일간 능동감시 유지**
 - 단,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입원치료 또는 자가격리 유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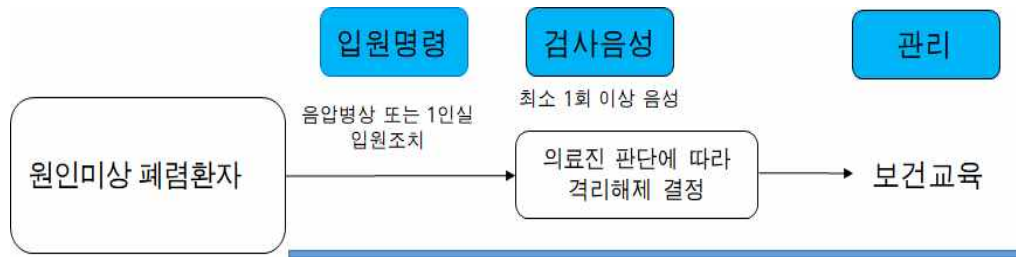
<그림 1. 의사환자 1 격리해제 및 감시 방안>

- **(의사환자 2)**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**14일간 격리 유지**
 - 즉, 퇴원하더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유지



<그림 2. 의사환자 2 격리해제 및 감시 방안>

- (의사환자 3)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검사결과 음성이고,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 해제



<그림 3. 의사환자 3 격리해제 및 감시 방안>

- (확진환자)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, 호흡기검체*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
- (격리해제 확인)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환자 상태 및 격리해제 일정확인
 - (의료기관) 환자 격리해제 전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알려 보건소에서 해제 통보
 - (실거주지 관할 보건소) 의사환자 분류 시 시·도 역학조사관과 확인한 격리해제 또는 검사 일정에 변경이 없을 경우 환자 격리해제, 시·도 역학조사관, 긴급상황실에 격리 해제 보고
- 격리해제 또는 검사 일정 변경 시
 - (의료기관) 검사횟수 및 격리해제에 관해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소와 협의
 - (실거주지 관할 보건소) 시·도 역학조사관에게 보고, 2차 검사 시행 여부 및 격리해제 여부 결정
- (격리해제 시 안내) 격리해제 후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
 - (의료기관 및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) 코로나19 증상, 예방법, 잠복기 내 증상 발현 시 신고 등 안내, 능동감시 안내 실시

라. 환경소독

☞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·관리(병원급 의료기관) 중 청소 및 환경관리 참조